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(SSM) 규제 관련 법 개정 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건의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년 8월 10일

청 원 인

성 명 : 정원준 외 27명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_____ (인) 외 _____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건의서

청원인	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성원아파트
	성명 : 정원준
건명	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(SSM) 규제 관련 법 개정 청원
소개년월일	2011년 8월 11일

소개의견

청원인 정원준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 의원입니다.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3년 8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“해외의 기업형 슈퍼마켓(SSM) 규제 관련 법 개정 청원”이었습니다.

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2조2의 1항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법률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지 않는 회사의 SSM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모든 SSM의 동등한 경제활동 보장을 법률로서 규정할 것을 요청하며 ‘유통산업발전법’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.

본 청원이 요청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 현행 ‘유통산업발전법’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SSM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이 자유롭지 못하였으므로 규제대상에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포함시켜 개정합니다.

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제12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	제12조의2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,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

<p>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영업시간 제한</p> <p>2. 의무휴업일 지정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영업시간 제한</p> <p>2. 의무휴업일 지정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--	--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다음은 2012년 7월 16일 한겨레에서 조사한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.

홈플러스와 같이 3000㎡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(SSM)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지만 매장 면적이 3000㎡가 안 되는 일본계 점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망에서 비껴서 있다. 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.

따라서 3000㎡이상의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소규모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SSM을 규제하는 것이 피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이에 각 지역 자치단체의 SSM에 대한 조례제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청원합니다.

2. 주요골자

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2조 2(유통산업발전법)

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,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문
<p>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영업시간 제한 2. 의무휴업일 지정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</p>	<p>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,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영업시간 제한 2. 의무휴업일 지정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</p>

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청원인 성명 : 정원준

청원인 주소 :

청원인 전화번호 :